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내용 및 방법 등(제10조의2제4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닭, 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내용

항목	내용
공통 신고 사항	가. 농장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농장식별번호 라.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바. 사육시설의 주소 사. 사육개시 연월일
사육현황	가. 가금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나. 가금(실용계, 삼계, 종계, 원종계, 순계, 육용오리, 종오리, 원종오리) 주령[주(週) 수로 헤아리는 나이]별 세부내용(마릿수) 다. 사육 총 마릿수

3. 사육현황 변경 시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기록·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